「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」 입안계획서

1. 행정규칙명 : 「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」
(관세청 고시 제2021-65호, '21. 12. 8.)

2. 개정 사유

□ 입·출항하는 국제공항에 자사 보세창고가 없는 항공사는 해당 국제공항에서 외국 항공기용품의 보세운송, 적재·하기가 불가능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, 자격전환 후 입출항하는 국내운항기 및 국제무역기의 적재·하기 절차 신설(이하 '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·하기 절차'라 함)

□ 기상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출항일자만 변경되는 경우 적재신청 정정을 생략하여 불필요한 절차 폐지

□ 출입국관리법 개정('22.8.18. 시행)과 관련하여 출국대기실에 있는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향상 등을 위해 기내식 제공절차 마련

□ 관세법 제106조의2 개정('22.4.1. 시행)에 따라 여행자 입국 시 자진신고한 항공기내판매품의 교환·환불·환급 절차 반영

□ 관세법령 개정사항,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등

3. 주요 개정내용

□ **‘공급자 등’ 범위에 항공기취급업 중 급유업체 포함**(제2조)

○ 현장 실제 항공유 적재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‘공급자 등’에 항공사업법에 의한 항공기 취급업체 중 급유업체 포함

* 항공기 취급업체로 등록된 급유업체가 적재허가부터 물품공급,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 및 환급신청까지 항공유 급유업무 전반을 대행

□ **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 허가(신청) 절차 신설** (제5조)

○ 국내운항 후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하여 외국으로 출항하는 국내운항기에 대하여 국내 출발공항에서 항공기용품을 적재하고,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재 절차 신설

*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 전까지 자체 봉인 후 다른 내국물품과 구분 운송

□ **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하기 허가(신청) 절차 신설** (제6조)

○ 외국에서 입항하여 국내운항기로 자격전환 후 항공기용품 보세창고가 있는 국내공항으로 운항하는 국제무역기에 대해 최종 도착지 공항 보세창고로 하기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절차 신설

* 국내운항기로 자격전환 후에는 자체 봉인 후 다른 내국물품과 구분 운송

□ **항공유 적재 및 적재확인서 교부 절차 명확화** (제9조)

○ 항공유 적재예정허가 절차, 적재확인 서류, 환급대상 수출물품 (항공유) 적재확인서 교부 절차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

* ① 적재예정허가 신청서는 당해 항공기 계류장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토록 명시
② 급유전표를 기장 등의 적재확인을 받은 서류로 명시
③ 전산시스템에 적재확인 등록으로 적재확인서를 교부함을 명시

□ **항공기용품 적재 신청 허가 후 정정생략 기준 신설** (제11조)

○ 항공기용품 적재량의 변동이 없음에도 기상악화, 긴급 정비 등의 사유로 출항예정 일자가 익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정정신청 절차 생략으로 민원불편 해소

* (개정전) 출항일 사전 적재허가 완료 → (기상악화 등) 단순 출항일자 익일 새벽으로 변경 → 항공사 직원 새벽 출근 정정신청 불편

□ **항공사 등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양도·양수 기준 완화** (제16조)

○ 전염병 발생 등 상황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 시 재고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화물관리번호 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항공기용품은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·양수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

* (개정전) 항공기용품은 물품공급업자, 항공기내판매업자에게만 양도 가능

□ **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절차 마련** (제19조)

○ 출입국관리법 개정*과 관련하여 '출국대기자에 대한 항공기용품 제공' 대상자에 송환대상 외국인 추가 및 '식음료 제공구역'에 법무부 출국대기실 추가하여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 향상

* 제76조의3('22.8.18) : 송환대상 외국인의 출국 전 숙식비 등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

□ **항공기용품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 추가** (제20조)

○ 항공사를 제외한 공급자 등이 외국 항공기용품 보세운송 시 운송수단을 기존 보세운송 차량에 추가로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세운송 수단 확대

□ **관세법 개정에 따른 기내판매품 교환·환불·환급 절차 반영**(제24조)

○ 항공기내판매품의 교환·환불·환급 절차 안내를 항공기내 판매품 판매자 의무사항에 추가

○ 관세법 제106조의2 개정*('22.4.1. 시행)에 따라 여행자가 입국 시 자진신고한 항공기내판매품도 교환·환불·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

* 여행자가 자진신고한 항공기용품이 환불된 경우 관세 환급 규정 신설

□ **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**
(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16조, 제17조, 제18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, 제29조, 제31조)

○ '공급자등' ⇒ **'공급자 등' 띄어쓰기**

○ OOO(별지 제O호서식) ⇒ 별지 제O호서식의 OOO로 **조문정비**

□ **외국용품 및 내국용품 적재(하기)허가 서식 변경** (별지 제3호, 제4호, 제5호, 제6호)

4.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: "붙임" 참조

5. 규제대상여부 : "해당없음"

6. 시행일자 : 2023. . .

7. 의견제출 방법

○ 제 출 처 :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

○ 담 당 자 : 박 종 호 사 무 관(042-481-7831)

○ 제출기한 : 2022. 12. .

○ 제출방법 : 이메일(park9402@korea.kr), 팩스(042-481-7937)